



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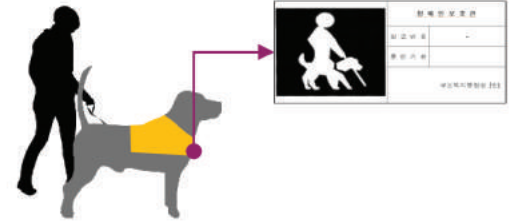
고객 에티켓



반려동물 동반탑승 고객 준수사항

🐾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

- ◆ 강아지, 고양이 등 작은 반려동물(맹수 또는 뱀 종류 등 제외)로 길이 60cm 이내에서 반려동물 이동장(45*30*25cm 정도)에 넣은 것
- ◆ 이동장과 동물을 합친 무게가 10킬로 이내의 것
- ◆ 시각 . 청각 . 지체장애인 보조건의 경우 동반 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탑승 허용



🐾 준수사항

- ◆ 역이나 열차에서는 케이스에서 꺼내지 않아야 하며, 반려동물이 담겨 있는 이동장은 좌석에 앉아 발 밑에 둡니다.
- ◆ 반려동물은 가방/이동장 등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여행이 가능합니다.
- ◆ 반려동물의 소리, 행동, 냄새 등으로 인해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. (반려동물을 싫어하는 다른 고객을 배려)
- ◆ 투견, 맹금류, 뱀 등 다른 고객에게 두려움과 혐오감을 주는 동물은 함께 여행이 불가능합니다.



반려동물 동반탑승 고객 준수사항

반려동물의 승차위치

Q 개 전용 좌석을 구할 수 있을 있나요?

A 반려동물은 여객운송약관에 의거 휴대품으로 구분되어 좌석을 지정하여 열차 이용이 불가능합니다.

Q 열차 운행 중 승차 위치는 어디 인가요?

A 동반 탑승하신 고객님의 발아래 혹은 무릎의 가방.이동장 안에서 대기합니다.
통로는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결코 두지 않으셔야 합니다.



반려동물의 범위

- ◆ 투견 . 맹금류 . 설치류 . 파충류는 고객의 안전상 운송을 하지 않음

투견 예시 : 도사견, 도베르만, 셰퍼드, 핏볼 테리어 등

맹금류란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갖고 있는 육식성 새들을 뜻합니다. 독수리, 매, 부엉이, 올빼미 등이 이에 속합니다.

- ◆ 병아리, 닭과 같은 가금류, 새끼돼지 등 가축류는 일반적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사람이 이용하는 여객열차로 운송할 수 없음

반려동물 동승 관련 법 및 규정

SR 여객운송약관 제20조

애완용 동물의 경우 가방 등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탑승 허용

- ① 철도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휴대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.
 2. 동물·식물 (단, 애완용 동물은 가방 등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제외하며, 식물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유해식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른 여객에게 불편 및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포장 처리 등의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)

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제16조

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77호 (2017.1.31. 개정)

- ① 철도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휴대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.
 2. 동물(단, 애완용 동물은 가방 등에 넣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제외에는 휴대 가능)

철도안전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80조

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로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2항을 동물에게도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당

철도안전법 제47조(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)

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6.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

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(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)

법 제47조 제6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"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

1.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

반려동물 동승 관련 법 및 규정

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

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여객의 안전운행 및 여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제지·안내

5. 여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.
라.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(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)을 철도차량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

동물보호법 제12조(안전조치)

입마개 착용 등 안전 관리 의무가 있는 맹견의 범위(동물보호법 시행규칙)

-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 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하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② 소유자 등이 별표3에 따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.
다만,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아니할 수 있다.

장애인복지법 제40조

보조견표지를 붙임 장애인 표지견은 동승 가능

-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,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별표3]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

1.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
2. 아메리칸 핏볼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
3.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
4. 스태퍼드셔 볼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
5.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
6.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